

사업연도	· · · ~ · · ·	☐ 재고자산 ☐ 유가증권	평가조정명세서	법인명	
------	---------------	--	---------	-----	--

※관리번호	□ □ □ □	-	□ □ □ □	사업자등록번호	□ □ □ □ □ □ □ □ □ □	-	□ □ □ □	-	□ □ □ □ □ □ □ □ □ □
-------	---------	---	---------	---------	---------------------	---	---------	---	---------------------

※ 표시란은 기입하지 마십시오.

1. 재고자산평가방법검토

①자 산 별	②평가방법 신고연월일	③신고방법	④평가방법	⑤적 부	⑥비 고
제품및상품					
반제품및재공품					
원 재 료					
저 장 품					
유가증권	채권				
	기타				

2. 평가조정계산

⑦ 과목	⑧ 품명	⑨ 규격	⑩ 단위	⑪ 수량	회사계산		조 정 계 산 금 액				⑮ 조정액 (⑮ 또는 ⑮와 ⑰ 중 큰 금액- ⑬)	
					⑫ 단가	⑬ 금액	신고방법		선입선출법			
							⑭ 단가	⑮ 금액	⑯ 단가	⑰ 금액		
계												

작 성 요 령

1. ③신고방법란에는 회사가 세무서에 신고한 재고자산 평가방법을 기입하고 ④평가방법란에는 회사가 실제로 평가한 방법을 기입하여 ⑤적부란에 신고방법대로 평가하였는지 여부를 ○, ×로 표시합니다.
2. ⑦과목란과 ⑧품명란에 자산별로 기입하고 ⑨규격란 및 ⑩단위란에는 회사의 재고자산수불부내용에 의하여 기입합니다.
3. ⑬회사계산금액란은 결산서상 재고자산명세와 일치하여야 합니다.
4. 조정계산금액(⑭란 내지 ⑰란)은 신고방법에 의한 세무조정단가에 의하여 계산하되, 신고방법에 의하여 평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자산별로 신고방법에 의한 평가액과 선입선출법(매매를 목적으로 소유하는 부동산의 경우에는 개별법, 유가증권평가의 경우에는 총평균법)에 의한 평가액을 계산하여 기입합니다.
5. ⑱조정액란에는 자산별로 ⑮신고방법에 의한 금액[단, 신고방법 외의 방법으로 평가한 경우에는 ⑮신고방법에 의한 금액과 ⑰선입선출법(매매를 목적으로 소유하는 부동산의 경우에는 개별법, 유가증권평가의 경우에는 총평균법)에 의한 금액중 큰 금액]과 ⑬회사계산금액과의 차액을 기입하여 평가감의 경우는 손금불산입하고 평가증(△)의 경우는 손금산입합니다.
6. 평가손익이 발생하지 않는 품목은 이를 합계액으로 기입할 수 있으며 품목별 계산기입이 곤란한 경우에는 별도 작성 비치하고 과목별 자산별 합계액으로 작성할 수 있습니다.